

블룸버그 시장의 행정명령 41호가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한다

블룸버그시장은 2003년 9월 17일에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들이 시(市)의 서비스를 확실히 받게 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41호를 발표하였다. 행정명령 41호에 의하면, 시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의 광범한 신상정보의 비밀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보호받아야할 신상정보중의 하나가 개인의 이민 신분이다. 이민신분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은 이민자에게 좋은 것은 뉴욕에도 좋다고 하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더욱이, 이 정책은 시 공무원들이 개인의 성적취향, 가정폭력의 피해자신분, 범죄 증인신분, 정부보조 수혜자, 개인 세금보고 기록 등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장의 사생활보호정책이 이민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신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증인일 경우, 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전화하거나 경찰관에게 접근할 때, 경찰관들은 당신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불법활동이나 범죄활동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당신의 이민신분을 묻고 밝히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비스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시(市)정부기관을 찾아가면, 시(市) 공무원들은 법규정이 요구하거나 당신이 특정한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의 이민신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민신분이나 기타 비밀신상정보를 시(市)공무원에게 알려주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민신분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비밀에 관한 당신의 권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거나, 또는 시(市)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의 수혜자격 여부를 알고자 할 때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전화 번호 311에 전화하십시오. 당신의 전화는 익명이 보장되며 171개국의 언어로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직접 311의 안내에게 문의할 수도 있고, 시장의 이민업무사무국을 포함한 특정한 기관을 연결시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MICHAEL R. BLOOMBERG
Mayor
Guillermo Linares
Commissioner

블룸버그 시장의 행정명령 41 호가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한다

아래의 내용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비시민권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 19 세 이하 아동들에 적합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 ❖ 응급 메이컬 케어, 앰블런스 서비스 포함
- ❖ 임신부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임신부 관리
- ❖ 가정 폭력 상담
- ❖ 예방주사
- ❖ 에이즈 검사와 상담
- ❖ 응급시 피난처
- ❖ 음독시 처치 전화상담서비스
- ❖ 식품 보조 서비스
- ❖ 아동복지와 수양자식의 양육서비스
- ❖ 공립학교 교육
- ❖ 학교 아침, 점심 급식 프로그램
- ❖ 노인 서비스와 노인센터 프로그램
- ❖ 소비자 사기에 대한 소비자보호업무
- ❖ 인권차별에 대한 보호
- ❖ 공원 편의 시설 이용
- ❖ 공공 도서관 이용과 특별행사
- ❖ 대중교통 이용
- ❖ 경찰 보호
- ❖ 소방서 보호
- ❖ 건강과 정신위생에 대한 일부서비스 제공

아래의 내용은 오직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권자들만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수있다.

- ❖ 푸드 스탬프
- ❖ 비응급 메디케이드
- ❖ 공영주택
- ❖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보조
- ❖ 섹션 8 할인권

시장의 이민업무 사무국
시장 마이클 R. 블룸버그
국장 사유 V. 보좌니